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22 선고 2020가단9201(본소), 2021가단520293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약정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(반소원고)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

담당변호사 백동근

변 론 종 결 2021. 5. 25.

판 결 선 고 2021. 6. 22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39,232,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16.부터 2020. 7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
반소 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 한다)에게 95,767,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6.경 피고와,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D 및 E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해 6. 25. 피고 명의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.

나. 한편 위 F리 토지는 당초 G 소유였는데, 원고는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. 5. 14. 위 D 및 위 E 중 1/4 지분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매매대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.

다.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무로 인해 2016. 3. 15. 이 사건 토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되게 됨으로써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렵게 되자, 원고는 수분양자를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, 2016. 6. 21. 피고의 조세채무 39,232,680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압류를 해제한 후 2016. 6. 27. 피고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.

라. 그 후 원고가 2019. 11. 말경 피고에게 2019. 12. 15.까지 위 조세채무 대위변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음에도,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조세채무 대위변제금 39,232,68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,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39,232,6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요구일 다음날인 2019. 12. 1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7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,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의 수분양자로 I, J, K, L을 소개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었으나, 원고는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,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개비 채권 1억 3,500만 원[I 관련 500만 원(당초 소개비 채권 1,500만 원 -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,000만 원) + J 관련 5,000만 원 + K 관련 5,000만 원 + L 관련 3,000만 원]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, 피고가 원고에게 I 등을 소개해 주었다거나 소개비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제2의 나. 1)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1억 3,500만 원의 소개비 채권이 있는데, 앞서와 같이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39,232,68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

상계하였는바,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95,767,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 주장과 같은 소개비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찬우